2009. 10. 30 제정
2012. 4. 27 개정

보상위원회 규정

삼 성 전 자 주 식 회 사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정관 제28조의2, 이사회규정 제11조의2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에 있어 그 구성, 운영,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사외이사들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겨 이를 충원할 경우에 충원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선임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제5조 (해임)

① 위원의 해임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 결의로 한다.

② 해임,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결원을 충원한다.

제3장 운 영

제6조 (위원회)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소집절차)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소집시기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24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모사전송방식, 기타 발송 및 착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각위원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의사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권 한

제11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2.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체계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5장 기타사항

제12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결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한

다.

제14조 (경비)

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15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